

# PL법과 유사 제도

## 1. 불법행위책임제도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경우에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표-1>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비교

구분	민법	제조물책임법
책임요건	①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과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소멸시효	①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②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①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②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2. 리콜제도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결함이 발견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표-2> 제조물책임법과 리콜 제도의 비교

구분	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성격	민사책임원칙의 변경	행정적 규제
기능	사후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사전에 위해 제품을 회수하여 예방적·직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근거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요건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한 리콜제도는 제조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함사실을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최종 출하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 가운데서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함제품 전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제품의 결함내용을 구매자인 유통,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매스컴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결함제품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들여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 환불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는 소비자가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부당거래·계약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제조물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제품을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을 예방하는 리콜 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는 품질상의 하자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모두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의 보상 기준으로 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 4. 제품안전인증제도

제품안전인증제도는 위해·위험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제품별 또는 업종별로 법률에 의한 안전기준의 설정, 안전전담기관 설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단속 또는 사업자의 안전준수 의무의 부과 등 행정법적인 규제를 말한다. 행정상의 안전규제는 제품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해야 할 최저기준을 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품안전을 규제하는 방법은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유통된 이후에 기준 위반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수를 명령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제품안전인증제도는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의 하나로 국가주도하에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의 보건, 위생, 안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품질사항도 정부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품안전인증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 형식승인) 품질경영촉진법(공산품 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압력용기 안전검사) 액화석유가스안전법(가스용품 안전검사)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규이지만 제품안전인증제도는 단속하기 위한 행정법규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지만 상호 보완하며 합침으로써 사회 전체로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공익의 확보를 위해 정해진 것이므로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며,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인 결함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상 단속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제조자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그 제품에 대해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